

#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

□ 제정 : 2014. 11. 6.

□ 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강의전담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 전임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4조(임용)** ① 강의전담교원의 임용은 공개 또는 특별채용으로 하되, 전임교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.

② 강의전담교원은 연봉 및 기간 계약제로 임용한다.

③ 강의전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소정의 업적평가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④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.

⑤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규정의 전임교원 재임용 절차에 준하며,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⑥ 강의전담교원의 업적평가 결과 하위 30%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
**제5조(직급)** 강의전담교원의 직급은 강의전담 조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, 연구 및 산업체 경력연수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용계약 및 보수)** ① 대학의 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교원의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② 강의전담교원의 보수는 연봉계약제로 하되,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임용기간의 연장시 연봉 조정은 본교 전임교원 보수 인상률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.

④ 상여금과 각종 제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퇴직금)** 본교 강의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, 그 적립액은 퇴직금으로 대치된다.

**제8조(복무)** 강의전담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적용한다.

**제9조(의무)** ① 강의전담교원은 학과에 소속되며, 본교에서 정한 책임시간의 강의를 하여야 한다.(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책임시간의 강의를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② 강의전담교원은 타 대학 등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담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
③ 강의전담교원은 10월 말일까지 업적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신분보장)** 강의전담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,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1조(업적평가)** ① 강의전담교원의 업적평가는 매년 10월까지 제출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며, 이 자료는 재임용 및 연봉책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의전담교원의 업적평가표는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기타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고운학원 정관 및 본교 인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